

2020 오토살롱위크 사무국

(주)서울메세인터내셔널 (04778)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서울숲 FORHU 802 호 Tel. 02-2284-0013 Fax. 02-2284-0005	(주)킨텍스 (1039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Tel. 031-995-8094 Fax. 031-995-8082
---	--

신청자 기본 정보

회 사 명	(국문)	대 표 자 명	사업자번호	
	(영문)	홈 페이지	http://	
주 소	(-)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이메일 주소)			
담 당 자	성 명	소속/직급	/	
	이 메 일	휴 대 폰		
	회사번호	팩 스		
품목분류 (□에 V 표시 하세요)	<input type="checkbox"/> Auto Service - 차체수리 설비 및 용품(판금/도장/덴트/코팅/광택 등) - 정비소 설비 및 장비, 정비서비스, 튜닝샵 등		<input type="checkbox"/> Auto Parts · Supplies - OEM부품 - 재제조부품, 대체부품 등	
	<input type="checkbox"/> Auto Tuning - 퍼포먼스, 드레스업 튜닝 - 휠/타이어	<input type="checkbox"/> Auto Care - 케미칼 및 필름류 - 세차기기 및 차량관리 용품	<input type="checkbox"/> Auto Accessories - 자동차용품, 인테리어 제품 - 실내외 물딩 등	<input type="checkbox"/> Auto Life - 자동차관련 서비스, APP 등 - 온라인몰, O2O, 시뮬레이터
	<input type="checkbox"/> Automobiles - 국내외 자동차브랜드, 캠핑카 - 슈퍼카, 커스터마이징카 등	<input type="checkbox"/> Future Automotive Show C.A.S.E - 전기차, 수소차,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모빌리티 등 - 커넥티드, 자율주행 기술, 관련 부품/인프라/서비스 등		<input type="checkbox"/> Auto Electronics - 블랙박스, 카오디오 - HUD, 네비게이션, ADAS 등
상세 전시품목				
해외 취급브랜드				

부스 신청 내역 및 금액

※ 1 부스 = 12 m² (3m x 4m)

구 분	단 가 × 신 청 규 모	부가세(10%)	합 계
<input type="checkbox"/> 독립부스	2,200,000원/부스×()부스=(원)	원	원
<input type="checkbox"/> 조립부스	2,600,000원/부스×()부스=(원)	원	원
총 액 (부가세 포함)			원
계약금 (총액의 50%)			원

- 독립부스 신청 기본 단위: 최소 2부스(24m²)
- 참가신청서 제출 후, 1주일 이내 계약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금 납부일 기준으로 참가신청(계약)이 성립됩니다.
- 잔금완납일은 2020년 8월 28일(금) 까지 입니다.
- 이메일 제출 시 하기 개인정보 수집절차에 동의합니다.
- 납부계좌 : 농협 301-0243-9630-41 / 예금주 : 킨텍스

『2020 오토살롱위크』 참가 규정을 준수하며,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 031-995-8082
 E-MAIL : auto@kintex.com

년 월 일
 대표자 (담당자): (인)
 ※후면 규정 확인 후 서명 필요

● 제 1 조 용어의 정리

1. "전시회"라 함은 "2020 오토살롱위크(K-AUTO)"를 의미한다.
2.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 및 계약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개인,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를 의미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서울메세인터내셔널 및 ㈜킨텍스를 의미한다.

● 제 2 조 참가신청 및 계약

1.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참가계약서를 제출하고, 계약금 (참가비의 50%)을 납부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2. 잔금 50%(부가세포함)는 2020년 8월 28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전시자가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체한 날로부터 납부일까지 법정 연체료를 적용한 지체가산금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3. 주최자는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참가기업의 참가 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제 3 조 부스위치 배정

1. 주최자는 신청 순서, 참가비 납입 순서, 전시품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전시위치를 배정한다.
2. 주최자는 전시회장의 공간 조화와 관람 효율, 전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4 조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타 전시자나 방문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품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피해를 줄 경우 주최자는 전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6. 주최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전시품에 대해 반출을 명할 수 있다.
7.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못질 등의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 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잔존물이 있을 경우 1루메(m)당 300,000 원 청구)

● 제 5 조 해약

1.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시자가 주최자의 승인 없이 참가를 포기할 경우에도 참가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가) 2020. 8. 14 까지 취소 : 참가비 총액의 50% (부가세 미포함)를 위약금으로 납부

나) 2020. 8. 15 부터 2020. 9. 19 까지 취소 : 참가비의 80% (부가세 미포함)를 위약금으로 납부

다) 2020. 9. 20 이후 취소 : 참가비의 100%(부가세미포함)를 위약금으로 납부

3. 환불이 불가능한 참가비는 차기에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경비로 일체 이월되지 않는다.

※ 취소시점 : 전시자의 취소요청 공문서 도착일자 기준

● 제 6 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천재지변, 재난, 질병 등)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7 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한 부스 면적을 벗어나 전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 8 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전시자는 전시회 종료 전에 전시품을 반출 할 수 없다.
2.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은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제 9 조 전시장 경비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전시품 반입, 설치, 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 면적 내 장치물과 전시품의 훼손과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 10 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11 조 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할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주최자 및 전시장(KINTEX)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12 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년 월 일

대표자 (담당자) :

(인)